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5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송옥주 · 임미애 · 윤준병
임호선 · 이병진 · 황명선
전종덕 · 김현정 · 이원택
문금주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

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피해”를 “피해와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어업회사법인”을 “어업회사법인,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마을어업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채취되는 패류·해조류 및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어업재해로 인한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가. 수산종자대금
 - 나. 어장 내 폐사된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 ----- ----- ----- ----- ----- -----피해와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9. ----- ----- ----- ----- ----- ----- -----어업회사법인,

을 말한다. 10. ~ 13. (생 략) <u><신 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④ ~ ⑧ (생 략)	<u>「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촌 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u> -----. 10. ~ 13. (현행과 같음) 14. “마을어업수산물”이란 「수 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채 취되는 패류·해조류 및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말 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어업재해로 인한 마을어 업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u> <u>가. 수산종자대금</u> <u>나. 어장 내 폐사된 수산동식 물의 수거·처리비</u>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